#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최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549

발의연월일: 2024. 8. 5.

발 의 자:최수진・김선교・김종양

조배숙 • 인요한 • 이인선

김예지 · 조정훈 · 임이자

안철수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기관(이하 "기관"이라 함)으로써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한편,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24년 1월에 자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혁신적·도전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 연구기관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였으나, 이러한 공공기관 지정해제는 정부의 입장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현행법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같은 법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- 5.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, 「광주과학기술원 법」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,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, 「울산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울산과학기술 원

## 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4조(공공기관) ① (생 략)	제4조(공공기관) ① (현행과 같		
	승)		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	②		
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			
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			
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.		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	
<u>&lt;신 설&gt;</u>	4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		
	<u>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</u>		
	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		
	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같은		
	법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		
	<u>출연연구기관</u>		
<u> &lt;신 설&gt;</u>	5.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에 따		
	른 한국과학기술원, 「광주과		
	학기술원법」에 따른 광주과		
	학기술원, 「대구경북과학기		
	술원법」에 따른 대구경북과		
	학기술원, 「울산과학기술원		
	법」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	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		